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사 : 2003. 10. 13

다. 상 정 일 자 : 2003. 10. 10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장 구 복 규

나. 제안사유

- 화순군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군수가 굴착하거나 군수 소유로된 온천공에 대한 관리운영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위하여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온천수 사용료의 조정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군유온천공”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5호)
-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온천공 소유자와 군수와의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공 소유자에게 채수요금을 지불하고, 채수 요금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온천수 사용료를 준용함을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 군수는 매월 말일 정기 검침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온천수 사용료를 조정함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공 소유자에게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공동급수시설 사용료로 징수함을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본문중 “온천지구”를 “온천원보호지구내”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급수조”를 “채수계량기”로 하고, 동조제2호중 “배수를 목적으로 채수장치 배수관으로부터 공동급수시설까지의 배수관 및 채수계량기 또는”을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송수관, 배수탱크, 배수관 및”로 하며, 동조제3호중 “급수”를 “공동급수”로 “배수장치로부터”를 “배수관으로부터”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군유온천공”이라 함은 화순군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온천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군수가 시설하거나 군수 소유로된 온천공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온천수의 공급 및 공급자 자격)”을 “(공동급수권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동급수의 자격을 갖춘자”를 “공동급수권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각 온천원보호지구내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급수계약)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급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급수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의 사용요금
6.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급계약)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온천공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시킨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온천수의 채수 장소 및 공급 장소
2. 온천수의 채수량 및 기간
3. 온천수의 채수요금 및 공동급수시설 사용료
4. 온천수의 채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온천수의 채수 및 공동급수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군수는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공 소유자에게는 제11조의2의 계약에 의하여 채수요금을 지불하며, 채수요금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온천수 사용료를 준용한다.

제12조의2와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용료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말일 정기 검침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온천수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2조의3(공동급수시설 사용료) ①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공 소유자에게는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공동급수시설 사용료로 징수한다.

제13조의 본문중 “소유자”를 “군수와 협의하여 소유자”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용수량의 인정) 온천수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1. 온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계량기의 임의 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할 때
4.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제18조제1항중 “사용료”을 “온천수 사용료”로, “익월”를 “다음달”로, “납입하여야 한다.”을 “납입하여야 하며 부과징수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온천수 사용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0조 본문중 “온천수 공급자”를 “공통급수권자”로 하고, 이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온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계량기의 작동”로 “도모한 자”를 “도모하거나 부당한 채수요금을 지불 받으려 한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장치를 철거하여야 할 경우

제21조제1항중 “사용료”를 “온천수 사용료, 공동급수시설 사용료, 채수요금”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온천지구에서 온천공으로부터 채수한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의 조정 부과징수 및 온천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온천원보호지구내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p> <p>1. “채수장치”라 함은 온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굴착한 온천공 및 온천수를 채수하기 위한 능러장치 일체와 급수조까지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p> <p>2. “배수장치”라 함은 온천수의 배수를 목적으로 채수장치 배수관으로부터 공동급수시설까지의 배수관 및 채수계량기 또는 이에 직결된 배수용구 등을 말한다.</p> <p>3. “급수장치”라 함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장치로부터 개별 이용시설까지의 급수관, 운수도 계량기 기타 급수용구를 말한다.</p> <p>4. (생략) <신설></p>	<p>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 ----- ----- -----채수계량기----- -----</p> <p>2.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송수관, 배수탱크, 배수관 및 ----- -----</p> <p>3. -----공동급수-----배수관으로부터 -----</p> <p>4. (현행과 같음)</p> <p>5. “<u>균유온천공</u>”이라 함은 화순군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온천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u>균수가 시설하거나 균수 소유로된 온천공</u>을 말한다.</p>
<p>제3조(온천수의 공급 및 공급자 자격)①(생략)</p>	<p>제3조(공동급수권자) ①(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온천공 소유자는 공동급수의 자격을 갖춘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p>	<p>② -----공동급수권자 -----</p>
<p>제4조(급수구역) 온천수 급수구역은 화순군 온천지구내에 한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 구역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p>	<p>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각 온천원보호지구내로 한다.</p>
<p>제11조(공급계약) 군수는 법 제13조 및 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고 온천수 공급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이용량 범위 2. 온천수 이용장소 3. 온천수의 이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제11조(급수계약)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급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급수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의 사용요금 6.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신설></p>	<p>제11조의2(공급계약) 군수가 설치한 공동 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온천공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시킨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수의 채수 장소 및 공급 장소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사용료) ①~②(생략) <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13조(채수계량) 온천수 공급을 위하여</p>	<p>2. 온천수의 채수량 및 기간 3. 온천수의 채수요금 및 공동급수시설 사용료 4. 온천수의 채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온천수의 채수 및 공동급수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제12조(사용료) ①~②(현행과 같음) ③군수는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공 사용자에게는 제11조의2의 계약에 의하여 채수요금을 지불하며 채수요금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온천수 사용료를 준용한다.</p> <p>제12조의2(사용료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말일 정기 검침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온천수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p> <p>제12조의3(공동급수시설 사용료)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공 소유자에게는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공동급수시설 사용료로 징수한다.</p> <p>제13조(채수계량)-----</p>

현행

개정안

채수량은 소유자가 설치한 채수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급량 또는 전월 분의 채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의2(사용수량의 인정) 온천수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1. 온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계량기의 임의 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할 때
4.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한 때

제18조(사용료의 납입등) ①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월액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폐지 및 일시급수의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의 납입등) ①온천수 사용료 ----- 다음달 ----- 납입하여야 하며 부과 징수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생략)

③사용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온천수 사용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0조(정수처분) 온천수 공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급수 및 채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정수처분)①공동급수권자 -----

현 행	개 정 안
<p>1~2 (생략)</p> <p>3. <u>온수도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이용요금을 포탈을 도모한 자</u></p> <p><신설></p> <p>제21조(이의 신청) ① <u>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u></p> <p>②(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3. <u>계량기의 작동-----도모하거나 부당한 채수요금을 지불 받으려 한 자</u></p> <p>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u> 2. <u>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장치를 철거하여야 할 경우</u> <p>제21조(이의 신청) ① <u>온천수 사용료, 공동급수시설 사용료, 채수요금 -----</u></p> <p>-----</p> <p>-----</p> <p>②(현행과 같음)</p>